#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98

발의연월일: 2020. 10. 27.

발 의 자:이종성・김승수・임이자

김예지 · 김용판 · 정운천

정진석 · 윤창현 · 김태호

이종배 의원(10인)

###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은 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 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를 행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근거가 없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학대 신 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4항 신설).
- 나.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확대함(안 제59조의3).
- 다.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함(안 제88조의2 신설).
- 라.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불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0조제1항·제2항).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 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 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 (미수범)의 죄
-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 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9. 「형법」 제2편제36장 중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

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 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 13.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 (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 1항 및 제2항의 죄
-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9조의3의 제목 중 "성범죄자의"를 "장애인관련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은 성범죄"를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성범죄 사건의"를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로 하 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 범죄"를 "장애인학대 관련 전문가, 성범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장애인복지시설" 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성범죄"를 각각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를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장·군수·구 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 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 시설"을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을 "장애인관련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성범죄"를 각각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성범죄경력"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으로 한다.

-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 애인지원센터
- 5.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에 한정한다)
-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 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 ④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 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 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0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기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밀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실 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 살인), 제252조(촉탁, 승닉 의한 살인등), 제253조(위계 에 의한 촉탁살인등) 및 제 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성	현	행		개 정 안
해, 존속상해), 제258조(중 해, 존속중상해), 제258조 (특수상해), 제259조(상해 사), 제260조(폭행, 존속폭	제2조(장애인의 ③ (생 략)		1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징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최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의한 살인등), 제253조(위계등에의한 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최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의(등수상해), 제258조의(등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

- 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 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 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 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 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 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 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 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 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 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 범)의 죄
-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 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89조 (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 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

- 대,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대,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 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 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 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 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9. 「형법」 제2편제36장 중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

- 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 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 다)의 죄
-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 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 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 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 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 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 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 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 임수증재)의 죄
- 13. 제86조제1항 ·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 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15.「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성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 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 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 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 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_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 호의 죄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죄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다) 동안 <u>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u>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u>성범죄 사건의</u>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u><신 설></u>

<u><신 설></u>

<신 설>

<신 설>

	<u>다음</u>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o) ō	라 "경	상애인국	관련기
				영하거	
애인	관련기	관			
				<u>Z</u>	상애인
학대:	관련범	죄니	-	성범죄	(이하
<u>"장애</u>	인학대	개관년	번범죄	등"이	라 한
다) /	사건의				

-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 인복지시설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 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5.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 동복지시설

<신 설>

<신 설>

<u><신</u> 설>

<신 설>

<신 설>

- ② (생략)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 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

-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 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의 의료기사에 한 정한다)
-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 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 집
-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 원기관
-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
  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
  시설
-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 ② (현행과 같음)
- ③ -----

\_\_\_\_\_

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u>성범죄</u>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 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u>장애인복지시설</u>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 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

				장애인학
<u>대</u>	관련	전문가,	성범죄	<u> </u>
				_

④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 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 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 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 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 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 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 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 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5	<u>장애</u>	인관	런기	<u>관</u>	 	

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 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 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 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u>장애인복</u> 지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u>시장·군</u>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인학대관련범죄등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등장애인관
런기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u>드</u>
⑥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
대관련범죄등으로
<u>장애인관련기관</u>
<u>장애인관련기관</u>
⑦ 관할행정기관장
<u>장애인관련기관</u>
②과하해저

- 수·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⑨ <u>시장·군수·구청장</u>은 취업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u>장애인복</u> 지시설을 운영 중인 <u>장애인복</u> 지시설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u>장애인복지시설</u>의 폐쇄를 요구 하여야 한다.
- ① <u>시장·군수·구청장</u>은 취업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 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 람이 있으면 해당 <u>장애인복지</u> 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 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u>장</u>애인 복지시설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 할 수 있다.
- 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u>기관장</u>
⑨ 관할행정기관장
<u>장애인관련기</u>
관장애인관련기
<u>-</u> 관
<u> 애인관련기관</u>
<u>,</u>
⑩ 관할행정기관장
<u>장애인관련기관</u> -
,
①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
런기관
장애인관련기관
<u>호</u>
①

③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제90조(과대료) ① <u>장애인복지시</u> 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10 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u>장애인복지시설</u>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 업자등에 대하여 <u>성범죄</u> 경력 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 1 2 1 1 2 2 1 1 0
<u>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u>
(13)
<u>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u>
<u>.</u>
· 제88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
<u>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u>
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
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0조(과태료) ① <u>장애인관련기</u>
관
② 장애인관련기관
<u>장애인학대관련범죄</u>
<u> 드</u>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